

## 국내·외대학과의 교류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37조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국내·외 대학과의 학생·학점 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원자격)**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학부 재학생(개정 2015.12.29.)
2. 국내대학은 교류협약에 의하여 선발하며, 국외대학의 경우에는 총 평점평균 성적이 2.5/4.5 이상인 자(단, 해외수업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.5/4.5 이상인 자)
3.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
4.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(국외대학 및 어학연수)

**제3조(신청절차)** ① 지원자는 매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지원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과(부)장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.(개정 2018.05.29.)

**제4조(선발)** ① 서류심사 후 성적평균평점이 상위인 자를 선발한다.

② 동점자의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한다.

1. 군필자 및 군면제자
2. 고학년
3. 연장자

**제5조(수학기간 및 의무)** ① 국외대학의 수학기간은 1학기 단위로 하며, 협정내용에 의하되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 해외수업 기간은 하·동계 방학중 실시한다. (개정 2014.08.12.)

③ 국외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본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인정하며, 제1항의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,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휴학 또는 수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, 본대학 및 수장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총장이 승인하는 타 대학의 교과목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택에서 수업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 규정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시

### 3-3-9~2 제3편 행 정

행한다.

**제6조**(학점인정) ①국내·외 대학과의 교류에 의한 총인정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이하로 하고, 각 구분별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.

1. 국외대학 : 학기당 18학점 이하
2. 국내대학 : 교류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고, 재택수업은 학기당 6학점 이하
3. 해외수업 : 총 6학점 이하. 다만, 어학연수는 1회 3학점 이하로 총 6학점 이하(다만,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) (개정 2017.09.26.)

②제1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(부)장이 본 대학의 교육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각 학과 또는 제2전공의 이수구분 및 학점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. 이 경우 교류대학의 교과목 학점이 본 대학 해당 교과목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. 다만,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류대학의 교과목명과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한다.

③국내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면 지원서에 수강교과목과 학점을 기재하여 해당 학과(부)장을 경유한 후 소속 대학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.

④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학점은 졸업학점과 총평점평균에 합산할 수 있다.

**제7조**(구비서류)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서(소정양식)
2. 학과(부)장 및 학장 추천서
3. 전학년 성적증명서
4. 재학증명서
5. 어휘능력시험 성적표(국외대학)
6. 교과목이수 계획서

**제8조**(등록) 교류학생은 교류기간 중 매학기 등록금을 본 대학교에 납입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9조**(교과이수) 교직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, 부전공, 복수전공, 연계전공 이수시 해당전공은 본교 해당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전공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